

대통령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

2006년 1월27일

국무총리 이 해 찬

국무위원
재정경제부장관 한 덕 수

●대통령령 제19299호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을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을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다음 각호의 1”을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5호·제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17.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및 사모투자전문회사

제2조에 제20호 내지 제2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0.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
- 2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 2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2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 2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25.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26.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및 대한설비공제조합
- 2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 28.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조합

제16181호

관

부

2006. 1. 27. (금요일)

제6조제2항중 “법 제26조제6항”을 “법 제26조제7항”으로 한다.

제18조의3·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출자 및 투자 대상회사) 법 제26조제1항제10호의3에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국외부실자산에 대한 출자 및 투자(이하 “국외투자등”이라 한다)

를 위하여 국외에 설립된 투자회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간접투
자기구(이하 “투자회사등”이라 한다)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2 규정에 따른 사모투자전

문회사

3. 투자회사등에 대한 국외투자등을 목적으로 국내외에 설립된 특수

목적회사

4. 특수목적회사가 인수한 국외부실자산의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

된 자산관리회사

5.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국외투자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하는 국내 회사

제20조의2(출자 및 투자의 한도) 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국외

투자등의 총액의 한도는 직전 연도 말의 공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제20조의3(국외투자위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법 제26조제6항

의 규정에 따라 국외투자등의 위험(이하 “국외투자위험”이라 한다)

관리를 위하여 공사에 국외투자위험관리위원회(이하 “위험관리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험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외투자위험관리의 기본계획 및 방침에 관한 사항

2. 국외투자위험의 관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3. 국외투자등의 타당성 및 건별 한도설정에 관한 사항

4. 국외투자등과 관련된 회사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외투자위험의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위험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공사의 부사장이 되고, 위원은 금융 산업 및 투자 분야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중에서 사

장이 위촉하는 자 5인과 해외사업 담당 임원 1인이 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의4(위험관리위원회의 운영) ①위험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

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

원장이 소집한다.

②위험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

다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이 영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위험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험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1조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을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조제1호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며, 동조제8호중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을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9호중 “신용협동조합법”을 “「신용협동조합법」”으로 하며, 동조제10호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고, 동조제11호중 “신용보증기금법”을 “「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하며, 동조제12호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하고, 동조제13호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하며, 동조제15호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하고, 동조제16호중 “새마을금고법”을 “「새마을금고법」”으로 하며, 동조제19호중 “예금자보호법”을 “「예금자보호법」”으로 하고, 제2조의3 제2호중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5조제1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0조제1항제1호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21조제2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이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외(國外)부실자산에 출자 및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621호 2005. 7. 29. 공포, 2006. 1. 30. 시행)됨에 따라 국외부실자산에 대한 출자 및 투자의 한도를 정하고, 위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실자산 인수대상 금융기관 범위의 확대(영 제2조제20호 내지 제28호 신설)

- (1)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인가 받았거나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들이 누적된 부실자산의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 기관들의 부실자산을 부실자산전문처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2)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실자산의 정리를 위탁하거나 그 인수를 요청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등을 추가함.
- (3) 이들 기관들의 부실자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채권 회수 관련 비용을 최소화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외부실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출자 및 투자의 대상이 되는 회사(영 제18조의3 신설)

- (1) 법률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 범위가 국외부실자산

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출자 및 투자에까지 확대됨에 따라 출자 및 투자의 대상이 되는 회사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 (2) 국내·외 투자기관과 공동으로 투자자금을 조성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를 국외에 설립된 투자회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사모(私募)투자전문회사, 투자회사에 대한 출자·투자만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특수목적회사 및 특수목적회사가 인수한 자산의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자산관리회사 등으로 한정함.
- (3) 국외부실자산에 대한 직접 투자 등 무분별한 투자를 제한함으로써 직접 투자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외부실자산에 대한 출자 및 투자의 한도(영 제20조의2 신설)

- (1) 법률에서 위임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외부실자산에 대한 출자 및 투자의 총액한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전 연도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로 정함.
- (2) 국외부실자산에의 출자 및 투자는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에 고위험이 존재하는 영역이므로 출자 및 투자의 한도를 정함으로써 국외부실자산에의 출자 및 투자에 따른 위험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라. 국외투자위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영 제20조의3 내지 제20조의4 신설)

- (1) 법률에서 한국자산공사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국외부실자산에의 투자위험의 관리체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외투자위험관리의 기본계획 및 대책 등을 사전 심의하도록 함.
- (2) 위험관리위원회가 투자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증권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6년 1월27일

국무총리 이 해 찬

국무위원
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대통령령 제19300호

증권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증권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지배주주의 변경승인 등) ①법 제3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배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최대주주(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제1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주식의 취득결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
3. 주요주주